



혁신으로 앞서가는
남원용성중학교

**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
소독제 안전 사용 안내**

< 가정통신문 >

주 소 : 남원시 춘향로 73
(<http://www.nwys.ms.kr>)
교무실 : (063) 633-4549
팩 스 : (063) 631-4734

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

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다음 내용을 안내드립니다.

학교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 저지를 위해 좀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.

1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.5단계, 비수도권 2단계 유지 [질병관리청]

○ 기간 : **2021.2.1.(월) 00:00 ~ 2021.2.14.(일) 24:00**

• 향후 1주일간 환자 발생 추이, 감염 양상 등을 고려하여 단계 조정 재논의

○ 주요 내용

가. **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** : 설 연휴까지 전국에 2주간 연장(직계가족 포함)

나. **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시행**

• 철도 승차권은 **창가 좌석만** 예매할 수 있으며 **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 금지·포장 판매만 허용**

• **고향과 친지 방문 자제** 및 온라인 성묘·추모 서비스 이용

• 숙박시설의 **객실수 2/3 이내 예약 제한**, 객실 내 **정원 초과하는 인원 수용금지** 조치

다. **집단시설 방역 조치 강화**

• **종교시설** : 정규 예배를 제외한 **숙박, 식사, 소모임 일절 금지**

• **미인가 대안 교육시설** : 행정명령 및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 예정

• **요양병원 및 요양시설** : 종사자와 간병인 대상 주기적인 **선제검사 의무화**

•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**선제적 진단검사** 유지

라.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

구분	2.5단계	2단계
집합금지시설	▲ 유흥시설 6종 (유흥·단란·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, 홀덤펍)	▲ 유흥시설 6종 (유흥·단란·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, 홀덤펍)
21시 이후 운영중단	▲ 영화관, PC방, 오락실·멀티방, 학원· 직업훈련기관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놀이공원·워터파크, 이미용업, 백화점·대형마트 ▲ 방문판매업, 노래연습장, 실내스탠딩공연장, 실내체육시설, 파티룸, 식당·카페(취식금지)	▲ (운영시간 제한 해제) ▲ 방문판매업, 노래연습장, 실내스탠딩공연장, 실내체육시설, 파티룸 식당·카페(취식금지)
행사제한인원 (결혼·장례식)	▲ 50명 미만	▲ 100명 미만
종교활동	▲ 10% 이내 대면 예배	▲ 정규예배 등 좌석 수 20% 이내로 제한
영화관	▲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	▲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
공연장	▲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	▲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

2 사회적 거리두기 질의응답 [전라북도청]

가. 식당·카페

Q1. 이제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건가요?

- A.** 전국의 식당과 카페(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)에서는 **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·음료를 섭취할 수 있음**
- 다만,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**마스크를 착용**하고,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
 - 또한, 2인 이상이 커피·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**1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**함

Q2.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?

- A.** 전국의 식당과 카페(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)에서는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·음료를 섭취할 수 있으며, **오후 9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·배달만 가능**함
-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, 식사 전·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**마스크 착용이 의무화**되며,
 - 포장·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**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**해야 함
 -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, **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**가 부과됨

Q3. 식당과 카페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?

- A.**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식당·카페에 **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은 금지**됨
- 다만,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, 결혼식을 위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,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(직장 회식은 금지)에는 4명이 넘어도 **식사모임이 가능**함
- 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, 기숙생활 등) 포함

Q4.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5명 이상 함께하는 것은 가능하나요?

- A.** 직원들 간 점심 식사도 사적 모임에 해당하므로 **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**

나. 종교시설

Q1.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?

- A.**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(종교인, 종교단체 등)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**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**를 말함

* 예배(주일 예배, 수요일 예배, 새벽 예배 등), 미사(주일미사, 새벽미사 등), 법회(초하루법회 등), 예회(아침좌선, 월초기도 등), 시일식 등 종교활동

- **큰 소리로 함께 기도, 암송하는 행위(예, 통성기도 등) 및 성가대 운영*** 금지

*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,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

** 찬양팀의 경우 노래는 하지 않고 예배 진행에 필요한 음악 연주만 가능

Q2.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(숙박 포함), 식사는 가능하나요?

- A.**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, 숙박,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**모두 금지**됨
- *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심방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,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됨

Q3. 수련원, 기도원,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가요?

A. 기도원 수련원,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, 특히,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됨

- 따라서,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
-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, 숙박,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

3 코로나19 소독제 안전 사용 안내 [환경부]

NO 하.지.마!
코로나19 살균·소독제 안전 사용 방법

YES 하.세.요!
코로나19 살균·소독제 안전 사용 방법

미승인·미신고 제품 안돼요
반역종 소독제 미승인 제품
미승인 소독제

사람에게 분사하면 안돼요

승인·신고번호 확인 하세요
※ 초록누리 홈페이지, 코로나19 세부 지침(공지)내 소독제 목록 확인
소독제 신고번호: 0112-34-5678
소독제 승인번호: 2789-1234

보호장비 꼭 착용하세요

피부에 닿거나 코에 들어가면 안돼요
코 눈 피부

친환경, 인체 무해한 소독제는 불법제품! 사용하면 안돼요
불법제품 허위과장광고 인체 무해 소독제 친환경 소독제

어린이 손에서 멀리 두세요

환기는 충분히 오래 하세요

2021년 2월 5일

남 원 용 성 중 학 교 장